

강원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4. ‘교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포함하여 교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말한다.
5.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정의를 따른다.
6.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교육분쟁’이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당사자 간에 발생한 다툼을 말한다.
8. ‘민원인’이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학습자 이외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수업권’이란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과 독자성을 타인의 침해 없이 인정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은 학생이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교육하며 이를 위해 교권과 교육활동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학교 및 강원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3.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학생·교직원·보호자의 책무) ① 학생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학습의 교육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수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나아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교 내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교육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중에 교직원-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간 상호존중의 언행을 실천하여야 한다.

2. 올바른 인권 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교육활동 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학교에 위임한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교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2. 보호하는 학생이 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을 존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원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2.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학교 현장 교원의 의견 반영
3.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
4.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심리적 지원책 마련
5.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
6.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하거나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행위를 방지해야 하며 축소·은폐 행위가 있을 조사하고 감독한다.
- ③ 교육감은 사안이 중대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교직원 간 이해관계로 인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제6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방문 절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마련한다.

1.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시스템 구축
2. 민원 및 상담 전용 별도 공간 마련
- ② 학교장은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체 없는 조사 및 교원지위법상 특별휴가 등을 포함하는 피해 교원 분리 조치 실시
 2. 관할 교육청에 신고 접수
 3. 교육활동 침해자의 학교 출입 금지 등 2차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4. 재발 방지를 위한 교직원·학부모·학생 교육

제7조(행정업무의 경감과 교원의 휴식권)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의 공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강 및 보강으로 인해 교원

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거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한다.

- ③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교원은 근무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장은 교원의 연구활동과 휴식을 위해 학교에 적정 규모의 휴게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제8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교원의 교육법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예방과 교육분쟁 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교권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교권보호센터에는 그 사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 ④ 교권보호센터에는 교육활동 침해 및 교육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10조(교권보호센터 기능) ① 교권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계획 수립 및 교원·학부모·학생 예방교육 실시
 - 2. 사안 접수 및 조사
 - 3. 언론 보도 등 대외적 대응
 - 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 5.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 보급
 - 6. 심리상담 및 법률자문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 7.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권보호센터는 신고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분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한다.
- ③ 교권보호센터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사립학교의 교권보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소속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공립 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교권침해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연수 교육과정에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